

서울교육대학교와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와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성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중등 인성교육 콘텐츠의 질적 고도화 및 학교 현장 확산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인성교육 관련 디지털·서책형 콘텐츠의 공동 기획 및 연구
2.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자문
3. 인성교육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4. 양 기관 내 관련 연구소(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연구소 등) 간의 학술 교류
5.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역할 및 의무) ①양 기관은 협력 분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②서울교대는 인실련이 제안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교육적·학술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구체적인 공동 연구 과제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 실행 방법과 소요 비용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계약 또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및 홍보) ①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②협약 사실의 홍보 및 기관 로고(CI) 사용은 사전에 상호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협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 연장에 대한 양 기관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6조(협약의 변경·해지) ①양 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7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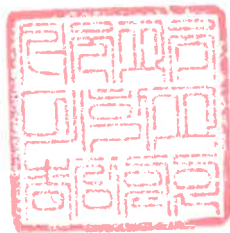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월 28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장신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회장 김정호

